

# 지방세 가산세와 농어촌특별세

## 가산세의 적용범위

전 동 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서기관

### 1. 의 의

조세법에서는 납세의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는 것을 담보받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바 그 중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가산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부과지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가산금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산제도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법상 정하고 있는 각종의 신고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가산세와 납부 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에서는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각 세법에서는 각각 가산세를 그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가산율도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상에서 가산세는 신고관련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관련 가산세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있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무신고·무기장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타의 가산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결합재무제표 등 미제출가산세,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납세조합납가산세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가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고 있다.

국세	신고관련 가산세	납부관련 가산세
국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인세법	무신고·무기장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기타의 가산세(결합재무제표 등 미제출가산세,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관련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납세조합납가산세
부가가치세법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2. 국세의 가산세 유형

### 1) 유형

#### (1)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개요

국세의 가산세는 세목별로 가산세가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세목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해당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2) 무신고가산세(기법 제47조의2)

##### (가) 일반무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액 산출기준〉

####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1방식)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1방식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2방식)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 적용방법**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소득세액을 차감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에는 (1방식)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소득세액을 차감한다.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4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의 범위〉**

1.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또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3) 과소신고가산세(기법 제47조의3)

## (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적용

무신고가산세의 일부 규정을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하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그리고 부

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기법 제47조의4)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방식)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기법 제47조의5)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산출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

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6) 가산세의 감면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정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고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시 감면 제외 사유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의 가산세 한도액은 없으나 구세의 경우에는 가산세의 한도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및 제5항(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이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및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 소득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 2) 국세 가산세의 지방세 적용 검토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별도의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국세의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본세인 지방세의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사항이다.

우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의 한 세목이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은 각 세목에서 별도의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에 부가되는 가산세라고 하더라도 지방세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가산되어야 한다.

[지침]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등 적용요령(행자부 세정-1653, 2004. 6. 18)

□ 관련규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라 한다)은 제3조제6호의 납세의 무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와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지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생략)

※ 증가산금 적용 체납액 : 50만원이상

○ 지방세법 제27조제1항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생략)

※ 증가산금 적용 체납액 : 30만원이상

□ 적용요령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이기 때문에 본세를 확정할 때 동시에 확정됨
-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할 경우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징수 방법도 본세의 부과징수방법에 의함
- 지방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적용범위는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상의 적용 규정이므로
-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국세기준에 따라 가산금과 증가산금 적용은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함

- 가산금 적용율 : 3%(국세징수법 제21조 참조)
- 증가산금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국세징수법 제22조제2항 참조)

※ 재정부에서 종전의 국세 가산금 등 적용기준(지방세 기준 → 국세 기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변경함(조세정책과-737, 2004.6.14 유권해석 참조)

□ 시행시기 : 본 요령은 시행일부터 적용

[종전의 유권해석 사례]

- ① “구 교육세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라고 규정하였는바 비록 국세의 증가산금 적용 체납액으로 30만원이나 지방세의 증가산금 적용 체납액은 10만원인 경우 본 세인 지방세 체납액(10만원)를 기준으로 10만원 이하인 경우 증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함(국세청 징수46101-248, 1994.1.10)
- ② 소액부징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소액부징수제도가 없으므로 본 세인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본 세가 2,000원 이상이면 농어촌특별세가 2,000원 이하라도 부과·징수함 (행자부 세정13407-01-1136, 1998.12.17 참조) .

**사례**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 적용기준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서 3%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22조제2항에 따라서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 증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경부 조세정책과-737, 2004. 6. 14)

### 3. 지방세 가산세

#### 1) 가산세 유형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조 제13의 2호의 규정에 의거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산금」이라 함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의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이행의무가 분리됨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첫째,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둘째,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가산율은 각 세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체이자적 성격이므로 지연일수에 1일 10,0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 〈 유형 〉

세목별	신고·납부	가산세	관련서식
취득세	•법 § 120	•법 § 121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 지연일자	•신고서 : 별지 제48호의 3 •납부서 : 별지 제48호의 4 (자동차 : 별지 제48호의 15)
등록세	•법 § 150의 2	•법 § 151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 지연일자	•신고서 : 별지 제53호의 4 (현 제48호의 3) •납부서 : 별지 제53호 (제53호의 2)
레저세	•법 § 155	•법 § 157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 지연일자	•신고서 : 별지 제56호 •납부서 : 별지 제49호
주민세	•법 § 177의 2	•법 § 177의 2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 지연일자	•신고서 : 법인세할 별지 제71호의 2 •납부서 - 법인세할 : 별지 제71호의 3 - 소득세할 : 별지 제71호의 4(별지 제49호)
주행세	•법 § 196의 18 ①	•법 § 196의 18 ②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 지연일자	•신고서 : 별지 제77호의 3 •납부서 : 별지 제77호의 4
담배 소비세	•법 § 233의 6	•법 § 233의 7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 지연일자	•신고서 : 별지 제94호의 3 (제94호), 별지 제94호의 4 •납부서 : 별지 제49호
사업소세	•법 § 250	•법 § 250 ④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 지연일자	•신고서 : 별지 제108호의 2 •납부서 : 별지 제49호
지역 개발세	•법 § 259	•법 § 259 ③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 지연일자	•신고서 : 조례로 정함 •납부서 : 조례로 정함
지방 교육세	•법 § 260의 4	•법 § 260의 5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 지연일자	

## 2) 미신고후 납부시 가산세의 적용문제

지방세법상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이므로 특별징수세목에 대하여는 신고납입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나누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만을 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을 것인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각 세목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의 원인이 각각 상이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연일자에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등록세의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한 때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 과소신고납부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인가?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 정당한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신고행위는 존재하되 보완할 수가 있는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면 과소신고를 한 이상 부족분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신고행위는 정당하되 보완할 수 있는 행위

로 보아 언제든지 추가로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나 신고 납부기한 내에는 보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3) 가산세 적용 제외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된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하고,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사유와 동일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 ②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⑥ '①' 내지 '③'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따라서 지방세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8호의 3 서식)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 여부를 통지(별지 제8호의 4 서식)하여야 한다.

**판례** 과소신고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공제액을 과다계상한 나머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2두12526, 2003.3.28)

## 4.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적용

### 1) 적용 기준

2007년부터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규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특별세법상 가산세 규정은 삭제되었다. 즉 종전에는 농어촌특별세법상에는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농어촌특별세법상의 가산세 규정이 삭제되면서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의 적용은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세인 지방세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고 국세의 세목인 이상 지방세의 부가세라고 하더라도 지방세의 가산세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일부 이견은 지방세분 부가세는 본세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국세의 실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는 논리가 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규정은 농어촌특별세에도 적용되고 지방세의 가산세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적용 방법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운영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신고관련 가산세와 납부관련 가산세가 구분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신고관련가산세와 납부관련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1) 농어촌특별세분 무신고 가산세

#### (가)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지방세분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경우 감면세액에 대하여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text{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일반무신고 가산세} = \text{지방세 감면세액} \times 20\%$$

#### (나) 전부부당 무신고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징수한다.

$$\text{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전부부당무신고가산세} = \text{지방세 감면세액} \times 40\%$$

이 경우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일부부당 무신고가산세

농어촌특별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text{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일부부당무신고가산세} = \text{지방세 감면세액} \times 20\%$$

#### (2) 농어촌특별세분 과소신고가산세

##### (가)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신고는 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text{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 \text{지방세 감면세액} \times 10\%$$

## (나) 전부부당 과소신고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세로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부당한 방법은 상기의 전부부당 무신고가산세의 적용 요건과 같다.

$$\text{지방세분농어촌특별세 전부부당과소신고가산세} = \text{지방세 감면세액} \times 40\%$$

## (다) 일부부당 과소신고가산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중 일부분이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text{지방세분농어촌특별세 전부부당과소신고가산세} = \text{지방세 감면세액} \times 10\%$$

## (3) 농어촌특별세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text{지방세분농어촌특별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text{지방세초과환급세액} \times 10\%$$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 (4) 농어촌특별세분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어촌특별세분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납세자가 환급받은 농어촌특별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어촌특별세분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산출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

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코드명	적 용	
	코드번호	내 용
87.국세(농특세가산세)구분	10	일반무신고 가산세 (적용가산세율 20%)
”	11	전부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가산세율 40%)
”	12	일부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가산세율 20%)
”	20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적용가산세율 10%)
”	21	전부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가산세율 40%)
”	22	일부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가산세율 20%)
”	30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이자율 1일 0.0003)
”	90	가산세 면제
88.국세(농특세가산세)의 부당한 사유 구분 코드	01	이중장부의 작성
”	02	허위·증빙·기록·문서의 작성
”	03	허위 증빙등의 수취
”	04	장부와 기록의 파기 또는 은닉
”	05	자산의 은닉 또는 소득 원천의 은폐
”	06	업무의 조작처리
”	07	국세의 포탈등 기타 부정한 행위 등
”	09	기타

## (5)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감면

지방세 과세관청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이  
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가 면제된다. 즉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 의 원인이 되는 사유  
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  
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에 따른 해당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  
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  
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  
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  
당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  
산세에 한한다)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시 감면 제외 사유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해당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의 가산세 한도액은 없으나 국세의 경우에는 가산세의 한도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및 제5항(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각각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세목은 지방세중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목이 아닌 이상 한도를 1억원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5. 지방세 가산세의 적용한계

### 1)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

지방세를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미이행 또는 과소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세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물론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동조에 열거된 사유는 제한적이고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부분을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 사유는 개별 사항별로 사실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가산할 수가 없는 논리에서 가산세를 부과 적용하는 것이다.

#### **판례** 가산세 부과와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 **판례** 담배소비세의 가산세의 타당성

[1]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의 반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는 반출신고 불이행을 일일이 포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반출신고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담배소비세의 누락을 방지하여

과세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지방세법 제233조의7은 의무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와 같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상의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3]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담배에 대한 반출신고기한 내에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담배소비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253 판결)

#### 판례 등록세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1]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그가 계산한 등록세와 교육세 상당액을 수표로 교부함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이를 가지고 관할 과세관청에 등록세 등의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수기로 등록세납부서를 발급하면서 임의로 신고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는 바람에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법무사는 등록세 등이 납부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이를 알고 다음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 등기신청의 흠결을 보정한 경우, 납세자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판례** 주민세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주민세의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이 아닌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로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민세의 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2379 판결)

**판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

**2) 가산세의 산정 방법**

지방세 가산세는 본 세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에 있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 하나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1일 100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text{납부불성실 가산세} = \text{본세액} \times \text{지연일자} \times \text{가산율(1일 10000분의3)}$$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모두 각각 가산 부과하여야 한다.

-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 본세액 × 가산세율(10%, 20%, 3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본세액 × 지연일자 × 가산율(1일 10000분의3)  
 ③ 총 가산세 = ① + ②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에는 신고납부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에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신고서(별지 제48호의 3 서식)에 따라 신고하게 하고, 신고시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되, 기한후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더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신고납부기한일 익일로부터 지연된 일자에 지연가산율(1일 3/10,000)을 곱하여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총세액으로 납세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시까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고지서로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기한후신고는 취득세에 한정하여 신고를 받을 수 있고, 기한후신고기간은 「취득세의 당초 신고납부기한 익일에서 30일 이내」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기한후신고대상도 아니므로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 본세액 × 가산세율(20%) × 5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본세액 × 지연일자 × 가산율(1일 10000분의3)  
 ③ 총 가산세 = ① + ②

[적용례] 납부세액이 100만원이고,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20일 경과 후 고지 전 기한후신고시 가산세액의 산정방법

$$\Rightarrow [100\text{만원} \times 10\%] + [100\text{만원} \times (3/10,000 \times 20\text{일})] = 10\text{만원} + 0.6\text{만원} = 10.6\text{만원}$$

$$\text{총납부세액} : 100\text{만원} + 10.6\text{만원} = 110.6\text{만원}$$

**판례** 등록세 가산세 산정

취득세 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따라 100분의 30이 경감된 금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자진납부한 이상 과세관청이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097 판결)

**판례** 징수유예와 가산세 적용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골프장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을 징수유예사유로 하여 신고세액 중 일부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자진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징수유예 결정을 하였다면 유예신청한 신고세액에 대해 그 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판례** 보통고지시 가산세 부과부

지방세법 제151조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미달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보통징수는 언제나 가산세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징수하도록 하는 의미이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

**판례** 가산세 부과 방법

등록세의 납부방식은 여러 필지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필지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고 / 가산세의 부과도 각 과세표준과 세율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가산세의 산출에 있어서는 등기시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과세대상토지만을 가려내어 그 각 필지의 지목과 면적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초로 가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2.24. 선고 92누15833 판결)

### 3) 신고기한의 연장과 가산세 적용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기한의 연장을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이행을 연기한 것이므로 그 신고의 기한을 연장하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기한연장을 받은 기한의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의 규정에서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

